

議에서 規制를 받을만한 事項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않고서야 正常的인 機能을 發揮해야할 委員會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말이된다. 假令 創作에 關한 일은 審議委員들의 趣味나 嗜好로 또는 權威를 위해서 審議過程에 多少라도 反映코져 하였다면 그 結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일이 추호도 있을 수 없다고 보면 委員會의 決定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있는 것이다. 審議의 規準은 어디까지나 審議對象인 建築物이 都市計劃 및 建築에 關聯된 基本的인 事項을 規制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領域을 넘겨지면 審議라기보다 오히려 設計를 委員들이 하고 있는셈이 된다. 이는 創作活動을 基本으로 하는 現業에 從事하는 建築家(士)들을 全적으로 不信任하는 印象을 줄뿐아니라 建築創作界의 混亂과 不作用을 自招하는 行爲가 되지않을지 알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斯界의 專門知識과 豊富한 經驗을 쌓은 委員들만으로 構成된 委員會에서 實質적으로 都市 및 建築問題를 社會發展의인 次元에서 이를 處理하고 있다고 보면 그 審議面에서 좀더 効率的인 方式으로 時間과 精神的인 負擔을 줄여주고 物質面에서의 必要以上の 費用을 減少시켜 줄 수 있는 方法은 없는지... 審議의 對象物을 놓고 審議하는 委員이나 이를 作成 提出한 建築家(士) 사이에 갈등과 硬直될 何等의 理由가 없다고 보면 좀더 和氣에 찬 對話와 相互理解 또는 協助로서 雜音에 따른 不作用을 얼마든지 解消시킬 수 있다고 본다. 設使 相反된 彼此의 立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建築에 關한 問題를 다루는 作業目標에서 明朗한 都市環境의 發展을 위해 共同으로 努力하고 있음은 分明한 事實이 아닌가 말이다.

● 맺는말

以上과 같은 建築設計事務所運營上의 当面問題中에서 重点이 될만한 問題들을 列拳하였으나 果然 이問題들이 現時點의 核心이 될만한 價值가 있는것인지의 眞否는 且置해 놓고 設計事務所를 運營하는 建築家(士)들에게는 肯定이 될만한 것들이라 보겠다.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의 實態는 그斷面에서 엿볼수 있듯이 그規模나 經營面 또는 設計體制面에서나 先進國과는 對比될 수 없는 落後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고 다만 当面問題가 內包하고 있는 共通點은 建築政策上의 要望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樣相도 變遷하는 社會構造와 呼吸을 같이하기 위하여는 不得已하게 體質改善을 徐徐히 하지 않으면 앞될 地點에 와있는 것이라 하겠다. 從來方式에 依한 個人의 經營體制에서 보다. 有機的이고 能率的으로 組織化된 事務所經營體制의 方向으로 建築家(士)의 品位保全과 收益에 따른 發展을 阻害하는 情性的인 過當競爭에서 오는 덤핑行爲의 根絶, 創作活動과 技術開發研究을 위한 情報交換 및 海外研修와 良質의 技術人 養成 및 待遇改善등이 設計事務所를 現代化 시키는 길의 하나라 하겠다.

建築設計는 人間生活의 三要素인 衣, 食, 住의 하나와 關聯하고 또한 절박하게 必要로 하는 創作活動인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設計事務所는 維持 되어야 한다.

行政側面에서 期待되는 建築像

金 永 哲

建築은 藝術의 一分野로서 美術分野에 屬하는 것으로 分類하고 있다.

우리가 藝術이라 함은 한마디로 사람이 自己의 感情, 像想, 느낌을 作品을 通하여 表現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感情, 느낌은 사람마다 環境에 따라 다르며 藝術作品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創造되는 것이므로 創作이라 한다.

이와같은 創作의 性格으로 보아 創作에 있어서 이어 從事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을 規制하거나 어떠한 基準을 設

定하는 등 行政的인 規制는 一般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事實上 現在 創作 活動에 對하여는 創作者的 權益에 保護하기 爲한 著作權法 以外에는 行政的인 面에서 特別한 規制를 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建築에 對하여는 建築士法, 建築法等에서 創作者的 資格, 創作의 基準等 많은 規制를 加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왜 많은 創作 分野中 唯獨 建築에 對하여서만 이러한

行政的인 規制를 加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번 機會에 이에 對한 必要性 및 問題點을 分析함과 同時에 앞으로 이러한 制度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 發展시켜야 한 것인가에 對하여 思考 하고 建築物의 創作에 臨하여야 할 것인지에 對하여 思考하여 보고자 한다.

1. 建築의 特性

建築은 餘地 創作 分野와 比較하여 많은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餘地 創作에 比할수 없을 程度로 公共性, 複合性, 産業性을 갖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即, 建築物은 固有한 創作의 概念으로서 文化的인 要素以外에 人間의 生活을 담는 容器로서, 또한 生活環境을 造成하는 重要한 要素中의 하나로서 이의 安全 与否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의 安危와 關聯되며 이의 良否는 都市環境等의 良否와 直結되는 重要한 것이다.

또한 建築物의 建築에는 龐大한 國家資源이 投資(‘78境遇 2,611拾億으로서 總 投資額의 37%)될 뿐만 아니라 餘地의 關聯專門技術 分野와 調和가 되지 않으면 作品으로서 完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作品의 製作 過程에서도 他 分野와 많은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即, 作品은 大分部 補助者, 關聯技術者, 施工者等 他人의 손에 依하여 具現되며 餘地, 創作 分野가 作品이 完成된 後 國民이 이를 評價하여 自由스럽게 選擇할 수 있는 反面 建築에 있어서는 大部分 建築主의 注文에 따라 이루어 지므로 國民의 作品에 對한 選擇權이 極히 制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建築 創作의 特性으로 建築에 對하여는 이에 從事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의 規制와 더불어 많은 制度的, 行政的인 規制가 加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 建築의 問題點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建築 創作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程度의 重要性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建築 創作은 現世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水準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다.

年間 10餘萬件(‘78의境遇 149,749件)씩 建築되어온 建築物中 자랑스럽게 作品으로서 내 놓을 수 있는 創作이 과연 몇 件에 達할 수 있을 것인지 疑心스럽다.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 原因을 찾는다는 것은 그 原因이 社會全般에 걸쳐 있으며 특히 이는 所得等 國民의 水準과 關聯된다는 점에서 同一한 條件 아래서 이에 對하여 論議하여 보아야 空論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經濟의 急速한 成長과 社會의 發達에 따라 建築需要가 激增하고 國民의 意識 構造가 變遷하고 있는 이 時점에서 다시 한번 思考하고 反省하여야 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建築創作에 있어서 問題는 이를 担当 하고자 하는 者를 養成하는 過程, 이를 担当하고 있는 者의 資質과 姿勢 및 이를 注文하는 國民의 意識 構造와 創作 活動을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等으로 区分될 것이다.

● 첫째, 우리나라의 建築에 關한 教育制度가 建築物의 創作 分野에 從事하기 爲하여 專門 教育을 받으려 하는 者에 對하여 創作에 關한 基本的인 知識을 어느 程度 注入시킬 수 있고 創作의 素質을 發掘하는데 寄與할 수 있었는가.

● 둘째, 既成 建築人의 作品 行態, 社會的인 位置等이 建築家를 指向하는 젊은 世代에 對하여 羨望의 的이 될 수 있고 建築家가 되기 爲하여 精進할 수 있는 動機를 賦與하고 創作의 質을 向上하고 그들 地位를 向上하기 爲하여 어느 程度 努力하였는가.

● 셋째, 國民의 建築家의 創作의 重要性을 어느 程度 認識하고 能力있고 誠實한 建築家를 選擇하려고 얼마나 努力하였는가.

● 넷째, 能力 誠實한 建築家가 創作活動에만 專念할 수 있는 社會的 制度的 雰圍氣가 造成 되어 있는가.

모든 점에서 우리가 어느 程度나마 肯定하기 힘든 問題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한 責任은 國民의 水準 制度的인 面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建築人 自身이 이에 對한 責任을 느껴야 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利益을 爲하여 法으로 定하여진 報酬料率은 아랑곳없이 덩핑하는 예는 너무도 많이 볼 수 있다.

建築界에 들어와 創作 活動에 있어 基盤이 되어야 하는 保障된 報酬가 一部 建築人에 依하여 차단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報酬로는 良心에 거리낌 없는 作品의 創作은 不可能한 것이다.

또한 거리에 보이는 無秩序하고 醜한 建物 이러한 것이 國民들의 建築 및 建築人에 對한 印象을 그르쳐 社會적으로 疏外되고 應分의 待遇를 받아야 하는 創作者도 待接을 못 받는 結果를 招來한다.

또한 建築 設計等에 關한 制度가 法制화된지 15년이 흐르는 동안 좋은 創作이 될 수 있는 條件의 造成을 爲한 制度的 發展에 對하여 建築人들이 어느 程度 體系있고 具體的으로 生覺하고 制度的 發展에 參與하였는가.

制度的 目的이나 앞으로의 方向에 對한 知識도 없이 近視眼的으로 私私로운 不便 때문에 傍觀者의 立場에서 批評을 하는 것은 制度的 發展은 커녕 混亂만 招來할 것이다.

建築制度는 좋은 作品의 創作으로 誘導하고 善良한 創作者를 保護하기 爲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者는 特別히 留意하여 業務를 하도록 業務上 不實이 있는 者에 對하여 制裁를 加하기 爲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할 것이다. 目

建築界에 있어서 問題點은 모두 建築人의 共同 責任이 며 보다 좋은 創作의 雰圍氣를 만들고 共同利益이 될 수 있는 方案에 對하여 體系있게 研究하여 政策이나 制度面 에서 反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創作 活動에 못지 않게 重要한 일인 것 같다.

特別히 現 資格 制度의 施行이 日淺하며 制度 施行 以前 에 類似業務에 從事하던 者도 既得權의 保障이라는 觀點 과 建築行政에 必要한 人力을 確保하기 爲하여 大分部 資格을 賦與 함으로서 이들이 創作 分野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는 點을 勘案할 때 그 必要性은 더욱 切實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現行 制度

建築活動에 있어서 現行 建築士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建築士 制度의 基幹이 되고 있는 制度 및 이의 趣旨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建築物의 設計는 一定 資格을 갖인 者만이 할 수 있도록 함.

建築創作이 餘他 創作 分野와 区分됨을 段的으로 나타 내는 制度로서 國民의 生命과 財産의 安危, 都市環境의 良否와 關聯이 되는 創作에 對하여 一定 資格을 갖인 者 만이 하도록 하고

2. 建築物의 設計 監理等의 業務는 原則的으로 登錄을 하여야만 行할 수 있도록 함.

이 制度는 建築士만이 建築創作에 對한 主人이 되도록 함과 同時에 不誠實하거나 業務上 過誤가 있는 境遇에는 大分部 直接 免許에 對한 制裁보다는 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爲하여 이러한 制度를 두고 있는 것으로 生覺할 수 있다.

3. 住宅과 一定 規模 以上의 建築物은 合同事務所로 登錄한 者만이 設計 또는 監理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制度는 우리나라의 特有의 制度로서 여러가지 目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同 制度는 우리나라의 與件 及 政策的인 要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그 目的이 創作과는 直接 關聯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即, 政府의 對民 業務中 가장 重要한 業務中 하나인 建築許可業務는 政府의 至上 目標인 庶政刷新이라는 次元에서 可及的 國民의 許可權者와의 接觸을 排除하기 爲하여

特別히 그 數가 많은 住宅의 建築에 있어 現場 調査와 法에 適合한지 與否를 建築士의 責任下에 調査, 檢討하게 하기 爲한 것이다. 이러한 制度는 現許可機關의 公務員의 數, 職種, 水準等을 勘案할때 우리나라 現實에서는 不可避한 制度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行政機關에서 할 일을 建築士에게 轉嫁한다는 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業務는 設計 또는 監理를 하는 建築士의 業務에 있어서 當然히 調査 檢討되는 事項을 單只 確認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責任있는 創作 活動을 하여온 建築士에게는 特別한 負擔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創作 活動에 對한 行政的인 干涉을 排除할 수 있다는 長點도 없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앞에서도 記錄한 바와 같이 建築創作에도 建築物의 規模가 漸次 大形化 되고 科學技術의 發達로 크게 複雜化되어 思想을 作品에 옮기는 데는 많은 施設과 人力이 所要되며 一般的으로 業務受注量의 起伏이 많아 이러한 施設과 人力은 恒時 活用이 어려운 境遇가 많아 2人 以上의 建築士가 施設과 人力을 共同으로 活用토록 誘導할 수 있는 效果를 期待한 것으로 볼수 있다.

4. 앞으로 建築活動에 있어서의 期待

現在까지 建築創作은 建築家의 意思보다 建築을 利害하지 못하는 建築主의 意思에 크게 影響을 받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建築家は 建築主의 意思를 無視할 수는 없으나, 어디 까지나 自己의 主觀으로서 우리 現世를 反映하는 文化的 遺産을 創造한다는 矜持를 갖고 創作에 臨하여야 한다.

建築家は 그의 作品을 圖面에 옮기는 것으로 그의 創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가 創作한 作品이 創作한 意圖대로 建築物로 具現시켜야 創作活動이 끝이 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建築物은 建築家가 主導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過程에서 妨害되는 要素가 있다면 이를 制度的인 面에서 補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建築物은 많은 技術分野와 複合的으로 이루어지는 創作活動이고 業務量의 起伏이 甚함을 勘案할 때 建築家は 可及的 施設의 公有토록 함으로서 經濟的인 負擔을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 몇가지 現況 問題點과 앞으로의 方向에 對하여 生覺하여 보았으나 建築에 對한 制度나 創作의 水準이 아직도 初期的인 狀態에 不過함으로 이에 對하여 모든 建築人의 關心깊고 꾸준한 研究와 改善이 있어야 할 것이다. □